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16일, 한민수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2025. 11. 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6. 2. 24.)

상정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6. 3. 3.)

상정, 축조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6. 3. 17.)

상정, 축조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6. 3. 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2026. 4. 9.) 상정, 소위심사보고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2026. 4. 14.)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한민수의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로서, 인공지능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기반 시설임. 이에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 패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은 인공지능시스템·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을 호소하며 국가적인 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인공지능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민간의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목표로 국가의 총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임. 현행 법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첫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일반적인 데이터센터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데이터센터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은 사각지대에 남아 있음. 둘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책을 적시에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데이터가 필요하나, 현재 신고 제도 등 정확한 현황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체계가 부재한 상황임. 셋째,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와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나, 현행 법제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기존 법령에 따른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규제 부담으로 작용하여 투자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민간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전력·입지 등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려는 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발전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최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었고, 해당 법률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법률 간 정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례적 성격의 규정의 경우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및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단순 인허가 절차 간소화나 신속처리 지원이 아니라 처리기한을 정하여 처리효과를 간주하는 이른바 타임아웃제를 전제한 복합 인허가 일괄처리는 인허가 의제 제도와 유사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일괄처리 대상인 인허가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하며 각각 개별 인허가 소관 부처의 실질적인 처리기간을 보장할 수 있는 일괄처리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현)

동 제13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